

화순군의회의원 상해보상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6. 4 화순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6. 4. 12

다. 상 정 일 자 : 2006. 4. 18

(제13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)

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문정조 의원

나. 제안사유

-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(2006. 2. 8 대통령령 제19322호)에 따라
- 의원에게 지급하는 경비 중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됨에 따라
-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의정활동비로 변경(안 제4조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문찬주)

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“회기수당”에서 “의정활동비”로 변경한 조례안으로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질의 답변요지

“생략”

5. 토론요지

“생략”

6. 심사결과

“원안가결”

7. 붙임 : 화순군의회의원 상해보상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등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“의정활동비”라 함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.

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“회기수당”을 “의정활동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